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6
----------	-----

제출년월일 : 2020. 3.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절차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개정하여 지원대상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나.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통학택시비를 지원을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개정

(안 제4조 제1호)

다.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4조제2호)

라.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안 제5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12. 16. ~ 2020. 1. 6.)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2019. 12. 11. 기획담당관-4270)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12. 11. 기획담당관-4270)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19. 11. 28. 주민복지과-18503)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신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p> <p>제5조(지원방법) ①·② (생 략) <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u>고등학교</u>----- -----.</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신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u>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u></p> <p>제5조(지원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관계법령 발췌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4. 학교 정보화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6.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 교육과정 운영사업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8. 기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연락처	(033) 330 - 2020